

언론피해구제제도 활성화방안

김 창 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1. 언론피해의 특징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언론에 한번 보도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는 힘들게 된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보도하기 전에 사전 충분한 검증과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체의 속성상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정정보도를 해도 일정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오보든 정보든 그 결과와 파급효과는 동일하다.

정확하고 바른 보도를 했다고 해서 모두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정보를 했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다. 법에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물론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으며 오로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지만 이것도 케이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일반 독자나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오보와 정보에 대한 구별과 판단이 어려우며 보도시점에서는 모두 정보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보와 정보의 파급효과는 동일하다.

- 언론에 의한 피해는 계량화하기 힘들다.

언론의 보도에 의한 피해는 물적으로 계량화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개인의 신용과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지만 이것을 물질적으로 책정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특히 한국처럼 명예를 중시하는 정신지향적 가치사회에서는 이에 합당한 손해배상체계가 형성돼야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물질적 보상'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편이다. 미국이나 영국같은 사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 언론피해의 또 다른 특징은 동시다발적이다.

한 언론사가 보도하면 너도나도 신문, 방송이 동시에 보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하소연할 방법도 기회도 없게 된다. 중앙, 지방 언론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와 반론권을 매체마다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한 엄격한 법의 집행과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요원한 문제다. 최근 일본에서는 통신사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더라도 그 책임을 스포츠지에 묻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예상된다.

○ 법적 피해보상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다.

민사소송법상 잘못된 보도에 대해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배상액수가 미미한 편이라 실익이 없는 편이다. 언론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Punitive Damage)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 언론사에 항의했다가 자칫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연예인들은 언론의 보도로 먹고 산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언론보도에 민감하다. 정치인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편이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법원에 접수시켰다가 슬그머니 그만 두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이런 공생공사의 관계에서 훗날의 보복이나 보상을 우려하거나 기대하기 때문이다.

○ 고위관료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언론피해에 취약하다.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언론보도에 민감했다. 자신의 각료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특히 신문보도를 보고 칭찬도 하고 고함도 쳤다. 따라서 신문의 영향력과 정치력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했다. 비판적 보도는 곧 인사조치를 의미했다. 그래서 권언유착이 쉽게 이뤄진 것이다.

○ 언론피해자들은 그 대응에 소극적이다.

일반인들은 법적, 제도적 구제수단 자체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고 또 잘 알아도 현실적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병어리 냉가슴 앓는 식이었다.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은 언론의 잘못된 피해를 보고도 앞날을 위해 또한 조직을 위해 참거나 타협하는 식이었다. 이런 현상이 언론보도의 신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오지 못했고 성실한 취재보도 관행을 만들지 못했다.

2. 언론에서 주로 범하는 위법 취재 보도

1) 소년법 제68조-미성년 피의자 신원공개

기자들은 취재보도시 보다 구체적으로 기사작성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자들은 위법의식 없이 사건기사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도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특히 미성년자 보도는 주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단골메뉴 10선에 포함시켰다. 지금도 우리 언론에서 미성년자와 관련한 보도를 살펴보면 위법한 사례를 부지기수로 발견할 수 있다. 소송에 나서지 않아서 그렇지 당사자나 이들 부모가 소송에 나서면 언론사가 결코 이기기 힘들다. 주의할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를 위반한 사례를 살펴본다.

사례1) 성명, 나이, 주소, 재학중인 학교, 학년 등 모든 인적사항을 완전하게 공개하는 경우.

사례2)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성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주소를 밝히는 경우.

사례3)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성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부모의 신원을 적시하거나 주변사항을 공표하여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경우.

사례4) 창원 중학교 학생 왕따 동영상 사건(2004년)

소년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이렇게 위반할 시에는 신문의 경우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2) 봉욕당한 부녀자 신원공개

성폭행 당한 피해자의 신원 공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잘못된 보도는 당사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면 ‘모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옥상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해 00병원에 입원했다’와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해 비관 끝에 옥상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해 00병원에 입원했다’는 보도는 불과 글자 몇 자 차이지만 내용상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한 지방에서 이런 류의 잘못된 보도로 여고생이 자살소동을 벌이고 집안이 이사를 가는 등 큰 소란을 빚은 적이 있다. 사건기자는 이런 류의 사고를 자주 접하게 되는 만큼 피해를 당한 인권을 언론이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보도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사례1) 성명, 나이, 직장명, 집주소 등 모든 인적사항을 공표하는 경우.

사례2) 성은 밝히지 않고 이름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근무하는 직장주소, 직장명 등을 적시,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경우.

사례3) 목사에게 성폭행 당한 여신도의 성과 나이만을 밝혔으나 교회명, 교회주소, 영문이니셜, 가해자인 목사의 성명 등을 공표하여 본인을 추정하게 하는 경우.

사례4) 성폭행 당한 소녀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의 신원을 공개하여 본인을 알게 하는 경우.

사례5)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근무하고 있는 업소 또는 기거하고 있는 보육원 등의 명칭과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을 알게 하는 경우.

3)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방법, 사용량 등 공표

약물복용이나 가스흡입 등 이런 사건이 잦아지는 만큼 기사화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히로뽕 등 ‘백색의 공포’가 점점 우리 가까이 침투해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기사에서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이용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 예가 자주 말썽을 일으키곤 한다. 기자의 전문성 부족이든 실수에 의해서든 이런 보도는 언론의 역기능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언론의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사례1) 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방법, 사용량 등을 공표하는 경우.

사례2)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사용방법, 효능, 구입방법 등을 상세히 공표하여 이를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과오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경우 등.

이런 내용은 실제로 신문과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잘못 보도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실제 사례)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방법, 사용량 등을 공표한 경우

한 일간신문은 ‘이제는 벤졸까지 흡입’이라는 제목으로 문제투성이의 기사를 게재했다. 인용하면,

“...형사기동대는 18일 환각증세에 빠지는 벤졸을 동네 약국에서 구해 흡입한 김아무개(18. 서울 마포구 창전동 0-00)군 등 8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략) 이들은 약국에서 벤졸 7병을 구입한 뒤 (중략) 비닐봉지에 넣어 냄새를 흡입하고 환각상태에 빠져 (중략) 황아무개군은 ‘벤졸이 본드나 부탄가스보다 빨리 환각상태에 빠지고 값이 싸 주위 친구들이 자주 사용한다’며 ‘동네약국 등에서 가죽점퍼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하면 의심받지 않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환각성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사용방법, 효능, 구입방법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보도했다. 이 보도를 통해 이를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까지

도 과오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으며 미성년 피의자들의 주소까지 공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각 언론사 사회부 데스크들의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최근 들어 자체적으로 사건보도 취재준칙을 제정, 시행하는 등 개선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다수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별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알권리 충족’이라는 미명하에 수없이 위법보도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4)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 및 고발자의 신원공표금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사건의 피해자나 신고자의 경우 관련범죄로 인해 보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신원공개를 막고 있다. 그런데 언론은 보다 자세하고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한다는 과잉친절행위로 위법보도하는 경우가 잦다.

5) 피의 사실 공표

한국 언론이 관행적으로 범해오는 대표적 인권침해사례중의 하나이다. 헌법상 모든 범죄혐의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전에는 무죄로 추정되고 형법 제126조는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예사로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밝힐 뿐만 아니라 범인으로 혹은 범법자로 단정하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이는 언론이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이 되는 셈이다.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서 아직도 이런 류의 기사가 버젓이 나오지만 선진언론에서는 위험천만한 보도이다.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또 중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그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언론으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한 피해자와 언론 모두를 위해서 이런 보도는 자제되어야 한다.

6) 개인이나 가족의 자살사건과 같은 사건사고를 무조건 기사화하는 관행

한 개인의 자살사건이든 가족집단지살사건이든 외국에서는 특별한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사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언론 특히 지방언론에서는 이런 류의 기사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죽음이라는 극적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개인의 비극을 보도할만한가의 가치평가를 하기도 전에 기사화하는 관행이 있다. 죽음은 중요한 인간사이고 언론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한 개인의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무시될 수 없다.

사례) 한 지방신문의 무책임한 왜곡보도의 사례를 통해 보다 분명한 교훈을 찾는다. 모지방신문이 게재한 정정보도문 내용이다. “경운기 사고 부모꾸중 국교생 음독자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중 “00군(필자가 익명으로 표시)이 지난달 초 경운기를 몰다 운전미숙으로 홍모군(12)을 치어 중상을 입혀 부모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이를 비판 음독자살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확인결과 “00군(필자가 익명으로 표기)은 경운기에 다친 홍모군의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언과 폭행을 당해 이를 비판, 현장에서 농약을 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부모와 이웃사람들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를 쓴 담당기자는 나중에 스스로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 했음을 인정했다. 한 개인과 그 가족의 비극이 공중에 알려지는데도 많은 한국언론은 이처럼 확인조차 않고 기사화하는 현실이다. 언론이 진실로 죽음이 중요한 기사감이라고 아직도 고집한다면 죽음에 이른 과정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 요인 등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도 이런 점들에 대한 성의 있는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 개인과 가족에게 치명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엉터리 보도가 됐다. 무엇보다 이런 보도가 어떤 공익성 때문에 왜 보도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잘못된 보도는 그것도 지방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넘어가기에는 한 개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할 정신적, 사회적 대가가 너무 크다. 또 이런 보도는 현장을 보지 못한 일반 주민들에게는 물론이고 경찰의 조사자료나 소송의 근거자료가 되기도 한다. 명백한 증인이 있고 사건당사자가 있을 때는 이런 식의 정정보도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시민은 언론의 보도로 모든 사안을 판단하게 된다.

7) ‘설(說)’이나 소문을 기사화하는 경우

‘--라는 설이 있다’ ‘---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있다’ ‘○○이가 리베이트로 2천

역원을 받았다고 한다' 등 밀도 끝도 없는 설과 소문을 보도하는 것은 어떤가.

설과 소문은 취재의 단초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자체가 기사로 둔갑하는 데는 무리와 위법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기사는 마치 전통처럼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국언론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것도 고급지를 자부하는 중앙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용감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다.

사례) 진○○양 살해사건 및 송○○양 실종사건(2002. 2월)

한국유학생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영국 경찰은 4월 22일 한국에 수사관 8명을 파견해 약 2주간 일정으로 최종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보충수사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희생자 가족과 한국언론에 수사경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국 수사팀은 2001년 11월 18일 영국 요크시 인근에서 여행가방에 든 변사체로 발견된 프랑스 어학연수생 진○○씨와 2002년 3월 14일 런던 도클랜드 오거스타 스트리트의 민박집 현관 벽장에서 시체로 발견된 영국 유학생 송○○씨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런던경시청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영국 경찰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5월 7일 열리는 런던중앙형사법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인정신문에 앞서 법원측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의 공영방송과 주요언론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 문제의 보도는 살해된 학생들의 '마약복용의혹' '범죄조직과의 관련성' 등에 모아진다. 국내 우수 언론이 일제히 이와 같은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재판이 열린다 해도 언급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영국경찰은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이 '범죄조직과 직접관련 증거가 없다'고 이미 밝혔으며 '마약관련혐의'는 기소내용에조차 올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결과가 된 언론보도는 유가족이 문제 삼지 않는 한 조용히 잊혀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런 류의 보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례를 준비했다.

이 사건은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없는 만큼 별 매스컴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내용이 뉴스밸류상 상대적으로 사회적 주목을 끌 수 없어 그렇게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인권침해보도는 오늘도 과거처럼 계속되고 있다는 점, 한국특파원이 작성하고 만든 프로그램과 뉴스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누구도 문제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각 신문사 방송사의 보도는 허위로 드러났고 유력한 범죄용의자 김○○씨는 2003년 영국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04년 현재 그는 무기수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나 이를 보도한 어느 신문, 방송사도 정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8) 제목이나 편집상의 문제로 오보를 하는 경우.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간신문은 전체 기사면적의 약 5분의 1(21%)이 제목이라고 한다. 이는 독자들의 눈에 확 띄이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제목의 속성상 과장되거나 생략되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본문내용이 지면관계상 잘려나가 정작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 제목으로 뽑히기도 한다. 문제는 많은 독자들이 내용보다 제목을 대충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신문을 본다는 점이다.

요즘은 지면도 많이 늘어나고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신문을 꼼꼼히 보는 사람들이 드물다. 대부분 바쁜 일과 속에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만 보거나 제목을 대충 훑어보는 식으로 신문을 많이 본다. 따라서 편집기자들은 어떻게 하면 독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갖은 묘안과 아이디어를 짜낸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집중시키는 부분이 바로 제목을 어떻게 무엇으로 정하느냐의 문제다.

제목이 섹시하고 강하면 눈길을 끌게 되고 관련기사가 읽히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형의 제목을 찾기 위해 편집기자들은 무리하게 논리를 비약시키기도 하고 제한된 지면에 맞추기 위해 쉽게 단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언론이 종종 무리수를 범하게 된다. 언론은 좀 앞서나갔을 뿐, 혹은 약간 내용에 차이가 났을 뿐 전체적으로 별로 틀린 게 없다고 자위할지 모르나 사안에 따라서 한 개인을 혹은 조직을 과멸시키거나 붕괴시키는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특히 스포츠지나 여성잡지 등은 이런 무리한 제목달기 때문에 피해당사자가 애를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정적인 ‘제목’ 때문에 한 개인의 일생이 망쳐지는 경우다.

사례) 무리한 제목에 의해 언론사가 제소당한 경우.

결핵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7개월 가량 됐다는 40대 남자가 박약(44) 약사에게 찾아와 최근 다리가 붓는다면서 15일분의 한약과 양약을 조제해줬다. 이 약을 복용하던 남자는 5일 만에 갑자기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박약사가 지어준 약에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한 신문이 ‘약사 조제 한약 먹고 절명’이라는 제목으로 4단 크기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제목은 약사가 지어준 한약 때문에 환자가 절명한 것으로 이해됐다. 이 보도가 있는 후 박약사는 주변으로부터 눈총과 지탄을 받기 시작했으며

약국을 찾는 손님도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다.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박약사는 점점 더 건디기 어려워졌다.

다행히 부검결과 사인(死因)은 폐결핵 악화로 밝혀지고 박약사가 조제한 약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따라서 ‘약사 조제 한약 먹고 절명’이라는 신문의 제목내용과는 사실이 다른 것으로 판명났다.

박약사의 정정보도 중재신청으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했으나 박약사의 피해는 조그마한 정정기사 하나만으로 구제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박약사는 끝내 약국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부검결과 발표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언론에서 별 근거도 없이 함부로 ‘약사 조제 한약 먹고 절명’이라고 단정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정법 위반에 언론윤리강령위반이다. 더구나 이런 제목은 가뜩이나 깊이 골이 패인 한약사와 약사 사이의 관계를 더욱 이간질시키는 보도일 수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일을 할 때는 항상 큰 그림 안에서 기사의 방향과 내용을 고민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9) 타매체 기사를 베끼거나 통신사 기사를 전재하는 경우

한국 언론현실에서 타매체 기사를 베끼는 것이 드문 현상이 아니다. 소위 낙종을 하게 되면 비슷하게라도 보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크기는 줄이는 한이 있어도 대부분 기사를 베껴서라도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이처럼 타언론사의 기사를 베껴서 냈다가 오보로 판명될 경우, 그 책임은 당연히 베껴서 보도한 언론사에 있다.

또 통신사의 통신문을 크레디트를 달고 전재하지 않고 통신문을 자사의 취재기사인 것처럼 리드문만 교묘히 바꾼다든가, 통신문을 적절히 섞어서 기사를 다시 만든다든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색하여 자사의 취재기사로 변질시킬 경우 책임은 역시 해당 언론사가 지게 된다. 심한 경우 통신문을 이용하여 사건현장에도 가지 않고서 자사의 기자이름으로 게재하는 비윤리적인 보도를 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언론사로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통신사의 통신문 게재가 면책되려면 미국의 경우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통신문의 기사가 정평있는 통신사에서 받은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 둘째 그 통신문의 허위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셋째 피고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 기사에서 허위의 개연성을 느끼게 하는 면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넷째 그 기사를 게재하는데 본질적인 수정없이 전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통신문을 윤색없이 전재한 경우, 기사취재의 여건, 진실에 접근하려는 기자의 취재태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통신문 전재에 의해 명예훼손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통신문을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사례) 통신문 게재한 언론사 승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93. 8. 12. 선고 93가 합2361판결에서 통신문을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 승소를 판시했다. 판결문은 “피고들은 기사의 제목만 연합통신과 조금씩 다르게 붙였을 뿐 연합통신의 통신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사실... 피고들로서는 지방지인 관계로 보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비교적 공신력이 있는 연합통신이 제공한 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연합통신이 제공한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짐으로 위 피고들이 위 기사를 작성 배포한 행위는 가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10) 데스크의 무리한 요구나 예단, 독단, 무소신의 경우

언론사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불법적 취재보도 이면에는 반드시 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하더라도 데스크(부장)의 무리한 지시나 일방적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도 많다. 특히 한국과 같은 권위주의적 명령식 지휘체제가 갖춰진 언론사의 편집국이나 보도국의 분위기에서 데스크의 영향력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논조를 심할 경우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바뀌버릴 수도 있다. 또 보도물을 부장이 이런 저런 이유를 달고 기사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권한이 당연한 것으로 데스크는 인식하고 있다. 기사물을 취재해 오는 것은 취재기자지만 이것을 보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최종판단은 기자의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데스크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데스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혹은 부당하게 기사가 처리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런 예는 일선 제작현장에서는 많이 목격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1993년 10월 10일 격포 앞바다에서 전복채 292명이 수장된 서해 횡리호 침몰사건은 우리나라 최대의 해상사고였다. 동시에 횡리호 선장 백운두씨 생존보도는 국내 언론사 최악의 오보 사건이라고 언론계와 학계에서 동시에 떠들어댔다. 한국기자협회는 93년 언론계 10대 뉴스로 백선장 오보사건을 꼽았다. 오보의 핵심은 죽은 백선장을 대다수 언론에서 살아있다는 식으로 잘못 혹은 성급하게 보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언론에서는 취재기자가 ‘백선장은 죽은 것이 확실시 된다’는 기사를 데스크가 일방적으로 ‘살아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런 내용은 물론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사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처리됐기 때문이다. 당시 모

일간 신문에서 데스크를 본 부장이 사적인 자리에서 직접 필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취재기자는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기사를 올려 보냈는데 방송이나 타신문사에서는 모두 ‘살아있다’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우리만 죽었다고 보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됐다. 그래서 안에서(데스크) 고쳐서 우리도 살아있다는 식으로 나갔는데 취재기자에게 미안했다...”라고 말했다.

백선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백선장의 유가족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지만 이 내용 때문에 어떤 언론도 처벌을 받았거나 손해배상을 했다는 보도는 본 적이 없다. 우선은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혹 소송이 제기됐다하더라도 이런 보도로 과연 데스크가 권한행사만큼 큰 책임을 지게될 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제작과정상 나타난 데스크의 부당한 간섭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보도물을 법정에서 곧이 곧대로 말할 기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판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제작관행과 기자들의 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위수 판사는 “보도과정에서 데스크의 과오나 실책이 드러나면 당연히 데스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자가 현 편집국에서 설혹 데스크의 실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어느 기자가 곧이 곧대로 자기 선배를 벌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는 한 판사도 수궁이 간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데스크의 입장도 곤혹스럽다. 많은 기사를 일일이 확인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와 아래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전달, 수렴해야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런 만큼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데스크의 실책이나 과오에 대한 법적책임공방 판례는 보기 힘들다.

3. 언론중재위원회 활성화 방안

가. 언론중재위원회란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이 중재신청을 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반론보도나 추후보도, 정정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기관이다.

1) 반론보도 청구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작성한 반론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피해 당사자가 올바른 사실

관계를 담은 반론문을 직접 작성해 해당 언론사에 그대로 게재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2) 추후보도청구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자 또는 범인으로 보도된 후 무죄판결 등을 받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해당 매체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

3) 정정보도 청구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 스스로가 해당 기사의 잘못된 점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정정보도청구는 중재절차와 상관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 중재신청은 문제의 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안에,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무죄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무혐의·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현실적 피해대책과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1) 언론중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현실적 억제효과(보도책임자와 대면 및 피해복구 요구)
- 미래적 예방효과(동일사안, 동일대상에 대해)
- 대안적 PR효과

2)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언론피해상담센터

○ 언론피해 구제관련 법률상담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 1일 「언론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 언론분쟁 관련 전문변호사와 상담원들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방문, 전화, 우편, 이메일,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상담료와 소송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법률적 조력을 받기 힘든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언론피해 예방 교육 및 법률자문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사후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언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종사자들에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보도활동이나 언론관련 판결 추이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유사한 언론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다.
- 각 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3) 소송과 별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소송의 성패여부를 가늠하는 시험
- 경비의 절감과 자문의 효율성

다. 언론중재제도 개선점

1) 접근성을 높인다.

- 현재 중재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한데, 특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24시간 인터넷, 팩스 접수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중재위원 선임시 적격성을 심의하는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

- 언론인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

3) 언론관련 민사소송 전담(희망사항-one stop service system)

- 정간법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민사소송(일정액수의 규모에 한해)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피해 구제와 관련된 one stop service system이 구축되어야 한다.

4)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필요

-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이 필요하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뉴스를 포함하여 「OhmyNews」나 「미디어다음」 등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 등도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